#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66호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7에 따라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 (신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는 금회부터 신청대상에 포함

####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3. 적용하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1. 3. 26(금) ~ 4. 26(월) 18:00** 까지 <2021년 신제품(NEP)인증 연간 접수 일정>

7 13	고수기기
一	섭수기산
제3회	2021. 6. 25(금) ~ 2021. 7. 26(월)

- 접수절차
  - ① 온라인 접수 후[www.nepmark.or.kr]
  -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 <u>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작성·출력 후</u> 대표 날인)는 반드시 원본 제출
    -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승 신규신정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	문) 1권 명기기교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 전역기물관디법」에 따는 전기물 인증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 <sup>7</sup>	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저	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 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b>(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b> 경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3	•		
신청서식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및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	, I		
구비서류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경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온라인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기	자료 <b>(해당시 필수제출)</b>		
접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	J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 의료기기의 경우,「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1등급		
	2등급 의료기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 <sup>=</sup>	<u>수 제출</u>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	]사기관의 시험성적서		
	<b>(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b> 운영요령 제7조	·에 의거한 <b>공인시험기관</b>		
	시험성적서,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을 확	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및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학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 <b>(해당시 필수제출)</b>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l 제1호 서식)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① <b>시</b>	서류명 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서류형태
	게둠(INEF)진궁 ㅠㅛ기산 건경 건경기	
<u>(원</u>	<u>!본 우편(방문)제출 필수)</u> 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	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선 * 선 * 1. 4	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환경기술 및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관련 평가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관련 평가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관련 평가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관련 평가자: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발명진홍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안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등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전원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문)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전원인건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성으로 검사 검증 등의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 험성적서, 12개월 이내) 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을 후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업자등록증 사본 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	관련 평가자료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 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참고사항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 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 의서"(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 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nep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 에서 받을 수 있음

### 4. 심사수수료 납부

-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품 1건당 심사수수료
- 서류면접심사: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현장심사: 50만원(현장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 참고사항

- 신제품 인증 수수료는 최초의 인증 신청 시에는 내지 않으며, 최초 의 인증 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 거부통지를 받고 이후 동일 제품에 대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제품 1건당 서류면접심사 20만원, 현장심사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산업기술혁 신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1.1.18.)
-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신청제품 1건당 서류면접심사 20만원, 현장심사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 표 5] 개정, '21.1.18.)

##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7, 팩스 02)3460-9029